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13년 12월 5일(목)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장성길 과장(2110-4792), 이창훈 사무관(2110-4794)

한 · 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2013.12.4(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함**

※ 일시·장소 : 2013.12.4(수), 발리 BNDCC
- (우리측) 윤상직 장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한·호 FTA 우리측 수석대표) 등 7명
- (호주측) Andrew Robb 장관, Jan Adams 통상차관보(한·호 FTA 호측 수석대표) 등 7명

□ 한·호주 양국은 '13.12.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함

○ 이어 개최된 **한·호 통상장관회담** 계기 양측은 한·호 FTA 7차 공식 협상에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하고, **한·호주 FTA 상 ISD 조항의 포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

□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을 진행한 이후, 한·호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initialing)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 가서명 이후 한·호 FTA 협정문 영문본 공개 예정

※ 한·호주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signing)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 완료 필요

□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TBT/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분야별 주요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한·호주 FTA 체결시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함께, 철광석·유연탄·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1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제 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 4위 교역국으로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주로 우리는 공산품 수출, 호주는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수출) 보유

○ 한·호 **FTA** 체결은 교역·투자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의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양측은 금번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호간 장관급 차원에서의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함

○ 호주측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 **환영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양측간 우리의 TPP 참여문제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

< 첨부 1. 한 · 호주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 첨부 2. 한 · 호주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
< 첨부 3. 한 · 호주 교역 · 투자 동향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장성길 과장(☎ 02-2110-47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호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1 상품 양허

□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 **(수입액 기준)** 호측은 거의 모든 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對호주 수입액 92.4%에 부관되는 관세를 8년내 철폐

○ **(품목수 기준)** 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90.8%를 8년내 철폐

□ 우리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 관련, 주력 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세번(수입액기준 76.6%)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

※ 기타 나머지 승용차(수입액기준 23.4%, 19개 세번)는 3년 철폐에 합의

○ 또한,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관세율 대부분 5%) 및 일반기계(관세율 5%) 대부분 즉시철폐,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 확보

□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 특히, 쌀·분유·과실(사과, 배, 감 등)·대두·감자·굴·명태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 반영

※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

※ 낙농품 중 치즈, 버터, 조제분유의 경우 과거 대호주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TRQ(저율할당관세) 부여

2 원산지

□ 양국간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

○ 특히, 자동차, 기계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생산 공정과 원자재 해외수입 정도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조항**을 도입

※ 협정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1년에 2차례 회의개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대상임을 각주(foot-note)로 명시 등을 통해 한·호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3 무역구제

□ 한·호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 이와 별도로 **쇠고기, 정제설탕, 맥주맥, 맥아, 옥수수**(기타)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반덤핑관세 부과시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도입과 **반덤핑 마진 산정시 제로잉**(Zeroing)**에 대한 금지**원칙 적용관행 확인

4 SPS

□ 상호간 **WTO/SPS 협정상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SPS 제도 이해증진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SPS 기술협의회 개최**

5 TBT

□ 표준·기술규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강화와 TBT 관련 문제해결 등을 위한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 기술규정 재·개정시 **상대국 이해당사자 참여 허용**과 마킹·라벨링 요구사항 등의 기술규정이 **불필요한 무역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6 서비스 · 투자

□ 한국과 호주 양국은 각각 **한·미 FTA,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 개방**

□ 투자 챕터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의무, 송금 보장 등의 투자보호 규범 규정

□ 한·미 FTA 수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 도입**

7 지재권

□ **WTO 지재권협정(TRIPS) 수준이상**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 단체표장·증명표장, 소리·냄새 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적용대상에 포함 및 자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확대 등 자작권의 보호강화

8 정부조달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까지** 정부조달(민자사업 포함) **시장을 상호개방**하여 우리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대

※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

○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9 협력

□ 농업, 수산업, 임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

○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대호주 농업투자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호주측의 수출제한조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및 조기복구 책 마련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문화협력**에서는 **시청각공동제작협정(부속서) 체결**을 통해, 한·호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에 대해 각각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의 혜택 부여

참고 2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한국양허				호주양허			
	품목수	비중	對호주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A)	8,940	75.2	11,097	72.4	5,450	90.8	4,248	86.0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780	46.3	2,099	42.5
유관세	7,008	59.0	2,706	17.7	2,670	44.4	2,149	43.5
3년(B)	1,019	8.6	367	2.4	115	1.9	434	8.8
5년(C)	564	4.7	2,684	17.5	411	6.8	256	5.2
7년(D)	265	2.2	15	0.1	-	-	-	-
8년(E)	-	-	-	-	32	0.5	1	0.0
8년내 (A+B+C+D+E)	10,788	90.8	14,162	92.4	6,008	100	4,939	100
10년	413	3.5	335	2.2	-	-	-	-
10년 초과	492	4.1	804	5.2	-	-	-	-
10년간 50% 감축	12	0.1	0	0.0	-	-	-	-
계절관세	5	0.0	3	0.0	-	-	-	-
양허제외/현행관세	171	1.4	26	0.16	-	-	-	-
총합계	11,881	100	15,330	100	6,008	100	4,939	100

* 품목수는 HS 2009년(한국), 2007년(호주) 기준, 금액은 '07~'09 수입액 평균
* 추후 기술협의 과정에서 일부 품목 미세조정 가능

참고 3 한 · 호주 교역 · 투자 동향

□ 교 역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10
수 출	4,692 (23.1)	4,691 (-)	5,171 (10.2)	5,243 (1.4)	6,642 (26.7)	8,164 (22.9)	9,269 (13.5)	7,760 (1.7)
수 입	11,309 (14.7)	13,232 (17.0)	18,000 (36.0)	14,756 (△18.0)	20,456 (38.6)	26,316 (28.7)	22,978 (△12.7)	17,029 (△10.9)
무역수지	-6,617	-8,541	-12,829	-9,513	-13,814	-18,152	-13,709	-9,269
총교역액	16,001	17,923	23,171	19,999	27,098	34,480	32,247	24,789

※ '12년 기준 호주는 우리의 제7위 교역파트너 (수출 12 위, 수입 6위)

□ 투 자

《단위 : 천불,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6	누 계
호주의 대한 투자	923,535 (30)	46,981 (24)	68,549 (35)	224,515 (33)	7,247 (24)	90,889 (25)	152,569 (27)	24,559 (11)	<'73~'13.06> 2,180,765 (454)
한국의 대호 투자	177,897 (82)	155,372 (120)	653,753 (142)	1,251,568 (130)	764,791 (113)	4,120,079 (88)	4,406,856 (78)	523,339 (34)	<'68~'13.06> 14,973,621 (1,404)

※ '12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 호주는 대한국 제17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

□ 한국의 對호주 10대 교역품목 현황(2012년)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관세율(%)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관세율(%)	금액(백만불)	비중(%)
승용차	5-10	2,114	22.8	철광	2	6,323	27.5
경유	0	1,937	20.9	유연탄	0	5,850	25.5
휘발유	0	712	7.7	원유	3	2,187	9.5
제트유 및 등유	0	288	3.1	동광	0	893	3.9
자동차부품	0-10	286	3.1	가축육류	3-72	780	3.4
무선전화기	0	224	2.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0-3	726	3.2
화물자동차	5	197	2.1	기타금속광물	0-6.5	685	3.0
전선	0-10	179	1.9	천연가스	3	613	2.7
건설중장비	0-10	179	1.9	당류	3-49.5	536	2.3
칼라TV	5	169	1.8	무연탄	0	505	2.2
소 계		6,285	67.8	소 계		19,098	83.1
전 체		9,269	100	전 체		22,978	100